

【논문】

도시공동체의 친밀성과 공공성*

정 성 훈

【주제분류】 사회철학, 도시인문학

【주요어】 도시공동체, 친밀성, 공공성, 협동조합, 위르겐 하버마스, 니클라스 루만

【요약문】 최근 한국에서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도시공동체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원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공공성을 더 이상 관공성으로 간주하지 않는 인식 전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 전환에 기여한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도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성과 함께 친밀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주장한다. 고대의 폴리스/오이코스 구별을 상기시킴으로써 공/사 구별의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친 아렌트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도 하버마스는 근대의 친밀 영역으로부터 새로운 공공 영역이 떠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19세기 말 이후 부르주아 공론장의 위축 과정을 진단하면서 하버마스는 친밀 영역의 재편 가능성과 문예적 공론장의 기능적 등가물에 대한 모색을 하지 않는다. 필자는 친밀 관계들에 기초한 도시공동체가 초보적 공론장들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도시공동체에 대한 관의 지원 정책이 유의해야 할 지점들 몇 가지를 밝히며 글을 마무리하였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NRF-2007-361-AM0027).

I. 서론

최근 한국에서는 ‘도시공동체(urban community)’¹⁾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3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마을기업 지원, 부모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처럼 대규모 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을 후원하거나 그런 모임들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도서관, 극장 등 마을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도시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입법은 없지만, 2007년 제정된 ‘사회적 기업법’은 여러 마을기업들이 생겨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작은 지역 단위의 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효과로 고려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덕택에 이제 마을 단위의 작은 협동조합들이 법인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기본법에 의해 배당 등의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사회적 협동조합’은 상호부조사업을 할 수 있고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도시공동체를 위한 간접적 재정 지원 효과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들은 관이 도시공동체의 ‘공공성(publicness)’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도시공동체와 그것을 이루어 온 주요 동력인 협동조합들이 그 구성원들만의 사사로운 이익집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공공적 기능을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

1) ‘도시공동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개념이다. 도시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도시 속의 여러 공동체들을 뜻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 특히 도시 속의 특정한 지역 혹은 마을에 근거한 공동체를 뜻한다.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하는 친밀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 지향을 견지하는 도시공동체의 모델은 한국의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마을, 강북구 삼각산 재미난마을 등 공동육아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웃 관계의 생활공동체로 발전해나간 곳들이다. 이들은 ‘마을공동체’라 불리기도 하며, 서울시는 특히 이 표현을 지원 사업 명칭으로 쓴다. 하지만 이 표현은 village community로 영역될 수 있고, 따라서 시골의 전통적인 마을로 오해될 여지가 많다. 그래서 익명적 관계가 지배적인 현대 도시의 조건에서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형성된 공동체를 뜻하기 위해서는 urban community가 더 적합하다고 본다.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성을 관공적인 것(the official)과 동일시해온 경향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1990년대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시민운동과 주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인식은 점차 변해왔다. 공공성은 공동의 것(the common)이며 열린 것(the open)이라는 인식,²⁾ 그래서 관이 직접 주도하지 않는 영역도 공공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런 인식은 공적인 것은 아래로부터 구성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군사독재 시절 관변단체에 국한되었던 민간단체 지원이 1990년대에 정부 시책과 대립할 수도 있는 시민운동단체로 확대된 것이 이미 공공 영역의 지형 변화를 보여준다. 그런데 시민운동단체는 정당과는 구별되지만 대부분 명시적으로 공공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 정당, 지자체 등에 직접 정책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변화를 사적 영역의 공공화로 부르기에 한계가 있다. 그에 반해 협동조합, 부모 커뮤니티, 품앗이 등 도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단체들 혹은 모임들은 공공복리를 지향점으로 갖기도 하지만 대개 일차적 목적은 그 구성원들의 권익과 친목에 둔다. 그들이 공공 정책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어찌 보면 자기들의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도시공동체의 공공적 기능을 인정한다는 것은 관공성으로 제한되지 않는 공공성 개념의 확장을 뜻할 뿐 아니라 공공 영역(public realm 혹은 public sphere)³⁾이 성립되고 활성화되

2) 공공성은 매우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필자는 사이트 준이치를 따라서 공공성 개념을 열려 있는(open), 공동적인(common), 관공적인(official)의 세 가지 의미가 서로 항쟁하는 지형 속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뒤에서 살펴볼 아렌트가 강조한 것은 앞의 두 가지 의미이며, 이 논문에서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더욱 강조될 것이다. 사이트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2009, 18~20쪽 참조. 공적인 것(the public)에 대한 아렌트의 개념은 II에서 살펴볼 것이다.

3) 이 글에서 필자는 ‘공공 영역’이라는 말을 아렌트의 public realm과 하버마스의 Öffentlichkeit(public sphere 혹은 publicness)의 공통 분모 정도로 사용한다. 아렌트의 공공 영역이 곧 정치를 뜻하고 이와 구별되는 특별한 관공 부문을 설정하지 않는데 반해, 하버마스의 공공 영역은 공적 부문(öffentliche Bereich 혹은 öffentliche Sphäre), 즉 공권력의 영역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양자는 의사소통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며, 열린 것이자 공동의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하

는 동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도시공동체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이러한 인식 변화와 관의 지원에 대해 한편으로는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성에 대한 일방적 강조가 도시공동체 활성화의 동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이미 형성되어 더 넓게 열리고자 하는 공동체나 애초부터 공공 기능을 지향했던 공동체에게 더 공공적이기를 요구하는 지원은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형성중인 공동체나 공공 기능에 대한 지향이 없거나 미약한 공동체에게는 관이 요구하는 법적 기준이나 재정 지원 절차가 도시공동체의 주요한 형성 동력인 친밀성(intimacy)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뒤에서 논하겠지만 도시공동체는 친밀성과 공공성의 긴장관계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도입한 지원 제도들 중 어떤 것들이 친밀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뒤에서 논할 것이다.

이 논문이 우선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낳은 사회철학적 혹은 정치철학적 논의이다. 1990년대 이후 우리에게 시민사회 개념과 공공성 개념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 이론가들로는 안토니오 그람시, 노베르트 보비오, 존 듀이, 한나 아렌트, 위르겐 하버마스, 사이토 준이치 등을 꼽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공공적인 것을 관공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열린 언어적 행위의 장으로 규정한 아렌트(Hannah Arendt), 그리고 아렌트의 공공성 개념에 함축된 의사소통적 행위를 부각시키면서 공공 영역을 공적 부문(국가)과 사적 부문(사적 소유자, 가정) 사이에 위치 지우고 공공 영역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로서 사적 자율성을 강조한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최근 한국에서 공공성 개념의 새로운 이해와 공공 영역의 지형 변화에 상당한 이론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⁴⁾ 또한

기에 하나의 표현으로 쓸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후의 서술에서 각 학자의 특유한 발상과 결부되는 부분에서는 아렌트의 것을 ‘공적 영역’으로, 하버마스의 것을 한국어 번역본의 표현을 따라 ‘공론장’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영역을 공공 영역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쓸 때는 ‘공적 부문’, ‘관공 영역’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 4)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황태연,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푸코 비판」, 『문화과학』 7호, 1995; 최갑수, 「서양에서 공공성과 공공영역」, 『진보평론』 제9호, 2001;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9; 홍성태, 「공론장, 의사소통, 토의정치-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 정치과정의 동학」, 『한국사회』 제13집 1호, 2012.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공공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일본 시민사회와 친밀 영역의 공공화 과정의 경험을 접목하여 아래로부터의 공공성을 강조한 사이토 준이치의 연구를 비롯한 일본의 연구들도 최근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⁵⁾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 정책의 직접적 입안자들이 이 학자들의 이론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여러 정책 논의에서 이들의 발상이나 특유한 표현법들이 활용되고 있다.⁶⁾

필자가 이 논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학자는 하버마스이다. 흔히 ‘공론장’으로 번역되곤 하는 그의 공공성 혹은 공공 영역의 개념⁷⁾은 아렌트와 달리 친밀 영역(intimate sphere)에서 형성되는 사적 자율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도시공동체가 갖는 공공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이다. 그리고 이런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초기 부르주아 공론장 형성 과정 이후 친밀 영역의 재편에 관한 연구의 결여, 그리고 과도하게 합리주의적인 생활세계 이해로 인해 오늘날 도시공동체의 형성 동력과 지향가치를 밝히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하버마스는 18세기에 문예적 공론장을 열어젖힌 “해가죽적 - 친밀한 원천을 갖는 주체성”⁸⁾이 주로 남성 가장에게 해당되었으며 여성은 독자로서 대공중에 참여하는 수준에

5) 민현정, 「일본 시민사회 성장과 공공성 재편 논의」,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2호, 2009; 이상봉, 「대안적 공공공간과 민주적 공공성의 모색」, 『대한정치학회보』 제19집 1호, 2011.

6) 조한혜정, 「후기근대적 마을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그것에 주목하는가? - 마을공동체를 위한 철학과 방법론」, 서울특별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 『마을공동체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2; 백선희,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서울시 공동육아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서울연구원, 2013.

7) 독일어 Öffentlichkeit는 어원 자체로 볼 때는 ‘공공적인 것’이지만 오늘날 여론이 형성되는 영역 혹은 공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를 publicness 혹은 public sphere로 번역하며, 한국에서도 ‘공론장’ 혹은 ‘공적 영역’으로 번역되곤 한다. 하버마스의 사용법에서도 대부분 공론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무난하다. 하지만 때때로 그 어원에 따라 공공성으로 번역해야 적합한 경우도 있다.

8)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2001, 127쪽; J. Habermas,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1990, 116쪽. 번역은 정확성을 위해 필자가 약간 변경함. 이하에서 이 책으로부터의 인용쪽수 표시는 ‘(공구번 ***, SdÖ ***)’으로 본문 중에 삽입한다. 이하에서도 intim, privat 같은 형용사와 관련해 한국어판 역자가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은 표현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약간의 변경을 가하였다.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후에 일어난 “가족적 친밀 영역의 은밀한 공동화”(공구변 264; SdÖ 244)를 부정적으로만 진단할 뿐, 어떻게 친밀 영역으로부터 공론장을 향해 새로운 여성적 주체성이 등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래서 이 논문의 II에서는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하버마스의 공공성 이론이 갖는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III에서는 친밀 영역의 재편에서 도시공동체가 갖는 의의를 살펴본 후, 도시공동체에서 친밀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관계를 논할 것이다. IV에서는 친밀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도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관의 지원이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하는가를 밝힐 것이다.

II. 하버마스 공공성 이론의 한계

1. 공론장 형성에서 친밀 영역의 기능에 대한 주목

아렌트는 중세와 근대를 거치는 동안 그 본래의 의미가 잊혀진 고대의 공/사 구별, 즉 폴리스(polis)와 오이코스(oikos)의 구별을 상기시키면서 ‘공공적(public)’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사소통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아렌트는 공공적인 것을 첫째, “공중(public)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모두에 의해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으며 매우 널리 알려질 수 있다는 것”⁹⁾으로, 둘째, “우리 모두에게 공동적(common)이며 우리가 그 속에서 사적으로 소유한 장소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세계 그 자체”¹⁰⁾라고 규정한다. 이렇듯 모두에게 열려 있고 모두에게 공동적인 영역인 공공 영역을 아렌트는 노동(labor) 및 작업(work)과 구별되는 행위(action)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행위란 “사물이나 물질의 매개 없이 인간들 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유일한 활동”이며, “다수의 인간들(men)이 지상에서 살아

9) H. Arendt, *The Human Condition*, 1998, 50쪽.

10) 같은 책, 52쪽.

가며 세계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상응하는 것이다.¹¹⁾ 즉 인간들 간의 논의 혹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렌트 자신은 이러한 공공 영역을 정치적인 것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때 정치란 국가나 관공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고 정치경제학적 영역인 사회적인 것과는 혼동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렌트의 공공 영역 개념은 우리가 비정부적 영역의 활동에 대해 공공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아렌트는 폴리스와 구별되면서 폴리스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가능하게 한 기반인 오이코스과 그것의 소유가 가진 신성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근대의 사회적인 것(the social)으로부터의 도피처로 성립된 사생활(privacy), 친밀성의 영역(a sphere of intimacy), 그리고 우정(friendship) 등에 대해서는 근대인의 순응주의(conformism)의 산물로 간주한다.¹²⁾ 아렌트에 따르면, 폴리스에서 다른 의견들을 가진 시민들 사이에 이루어진 논의(discourse)를 바탕으로 한 우애(philia)와 달리, 친구들이 서로 각자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의견 대립을 피하는 근대의 우정에서는 행위 능력 및 언설 능력이 상실된다.¹³⁾ 차이를 가진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만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본 아렌트에게 근대적 친밀성은 세계로부터의 소외이다. 그래서 그는 이 근대의 사적 영역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주체성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주체성으로부터 열리는 새로운 행위의 장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하버마스는 아렌트의 영향을 받아 공공성을 의사소통적 행위와 연결시킨다. 그리고 고대에 공공생활에의 참여가 가장으로서의 시민의 사적 자율성에 의해 가능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근대의 사회적인 것과 사생활을 부정적으로 진단했던 아렌트와 달리 하버마스는 18세기에 핵가족적 친밀 영역을 바탕으로 생겨난 ‘부르주아 공론장’을 주목한다.

하버마스는 사적 영역이 사회적 재생산 영역과 사생활 영역으로 분리되던 시기에 핵가족에 의해 성립된 사적 자율성과 그로부터 나온 순수한 인간

11) 같은 책, 7쪽.

12) 같은 책, 41쪽.

13) 같은 책, 49쪽; H. Arendt, *Men in Dark Times*, 1970, 24쪽.

성의 관념이 “국가의 법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법칙도 정지”하며 “지위 전체를 도의시하는 일종의 사회적 교제”(공구변 107; SdÖ 97)의 공간인 ‘문예적 공론장’을 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문예적 공론장의 인본성이 “정치적 공론장의 효율성을 매개”(공구변 133; SdÖ 121)하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하버마스에게 부르주아 공론장은 공권력에 맞선 공중의 논의가 일어나 여론이 형성되는 정치적 기능을 갖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정치적 행위의 영역으로 발전한 공론장이 핵가족적 친밀 영역의 확장과 보충으로 발생했다는 것, 그래서 초기에는 “사적 영역과 공론장을 가르는 경계선이 집의 한가운데를 지나게” 되고, “사적 개인들은 그들 거실의 친밀함으로부터 살롱의 공론장으로 나온다”(공구변 120; SdÖ 109)는 점을 강조한다. 친밀 영역의 사생활 덕분에 스스로를 부르주아 혹은 상품 소유자이자 동시에 가장 혹은 인간으로 간주하는 사인(私人)이 생겨났고 공중에 참여하는 사적 개인의 자율성이 육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적 행위의 영역인 부르주아 공론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친밀 영역이 갖는 의의를 통찰했다는 점에서 하버마스는 아렌트가 가졌던 근대에 대한 비판주의를 넘어서고 있다.

2. 친밀 관계의 재편에 대한 관심의 부재

하버마스는 친밀 영역에 대한 아렌트의 비판주의를 넘어서고 있긴 하지만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가능하게 한 친밀 영역에 대한 그의 통찰은 친밀 관계의 한 양태인 핵가족에 국한되어 있다. 루만(Niklas Luhmann)에 따르면, 근대의 익명적 대중사회의 등장과 함께 출현한 친밀 관계의 초기 양태는 혼외 관계인 열정적 사랑이었고, 열정의 과도함이 문제가 되었을 때 부각된 양태 역시 결혼과 무관한 우정이었다. 18세기 말 결혼과 섹슈얼리티를 포섭한 사랑의 의미론인 낭만적 사랑이 대체가 되었을 때에야 친밀성은 핵가족의 주요한 속성이 되었다.¹⁴⁾

하버마스는 루만과 마찬가지로 친밀 영역이 “충만하고 자유로운 내면성

14)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2009, 204~205쪽.

의 역사적 발생 장소”(공구변 97; SdÖ 109)임을 잘 지적하고 있다. 루만에 따르면 친밀 관계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유일무이한 세계를 확인받게 된다.¹⁵⁾ 사적 자율성을 가진 개인의 성립조건은 서로를 출신가문이나 역할로 환원하지 않고 고유한 세계를 가진 인격으로 대하는 사회적 관계의 확산인 것이다. 여기서 열리는 둘만의 세계는 고대의 폴리스에서 열린 세계보다는 훨씬 좁지만 출신 가문에 귀속되지 않는 세계라는 점에서 아렌트가 주목한 세계보다 훨씬 자유로운 세계이며 밀도 높은 관계의 세계이다. 그리고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 성립 이후 이러한 관계는 하버마스가 파악하듯이 주로 핵가족을 성립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핵가족이 그 유일한 형식은 아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필자는 오늘날의 도시공동체 중에는 핵가족을 포괄하는 사랑과 우정의 네트워크인 친밀공동체들이 있다고 본다.

친밀 영역을 핵가족과 등치시킴으로 인해 하버마스는 18세기 공론장에서의 남녀 불평등 문제, 그리고 19세기 말 국가의 새로운 간섭주의에 의해 이루어진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교착 문제 및 가족의 기능 상실 문제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우선 하버마스는 18세기에 “여성과 경제적으로 자립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정치적 공론장으로부터 사실적으로, 법적으로 배제”(공구변 132; SdÖ 121)되어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여성 독자층이 문예적 공론장에 강력하게 참여하였다고 말하면서 이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살롱과 커피하우스의 정치적 논의에 참여하는 사적 자율성과 독자로서 대(大)공중에 참여할 수 있는 사적 자율성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도 말이다. 물론 하버마스가 이러한 불평등을 정당화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간섭주의에 의해 “국가의 점진적 사회화와 동시에 관철되어 가는 사회의 국가화”(공구변 246; SdÖ 226)가 이루어진 이후, 그리고 가족의 양육, 교육, 보호, 양호, 지도 기능 등을 상실하게 만든 복지국가적 보장(공구변 261~262; SdÖ 241~242)이 실현된 이후, 친밀 영역이 재편되는 양상에 대한 그의 고찰에서 새로운 여성 주체성의 등장이나 탈가족적 주체성의 등장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비록 둘만의 관계에 한정된 대안이긴 하지만 기든스가 부부간 불평등이 은

15) 니클라스 루만, 같은 책, 39쪽.

폐되었던 낭만적 사랑 이후의 대안으로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을 제시하는 것¹⁶⁾과 비교할 때 이 주제에 대한 그의 관심은 과소하다.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19세기 말 이후 공론장에 대한 하버마스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그는 부르주아 공론장이 “국가와 사회 사이의 긴장영역에서 발전”(공구변 245; SdÖ 225)했다고 보기 때문에 간접주의와 복지국가가가 이러한 중간영역의 입지를 약화시켰다고 본다. 이러한 교착 경향의 결과를 그는 “사회적 영역과 사생활 영역의 양극화”, “문화를 논하는 공중에서 문화를 소비하는 공중으로의 변화”라는 두 측면에서 고찰한다. 첫 번째 양극화 진단에서 그는 가족에 의한 사적 자율성이 소비공동체로 위축되었다는 점, 가족이 경제적 임무로부터 벗어나면서 인격적 내면화의 힘을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가장 권위의 해체, 모든 선진산업국가에서 관찰되는 가족 내부 권위구조의 평준화”라는 양상을 진단한 후, 그 원인을 “개별 가족구성원들이 가족 외적 기관인 사회에 의해 직접적으로 사회화”(공구변 263; SdÖ 244)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여기서 하버마스가 공론장의 위기만 진단하게 되는 것은 그가 가족의 권위구조 해체 및 탈가족적 사회화 추세가 새로운 공론장 형성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20세기 미국의 교외에서 생겨난 ‘이웃관계’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부르주아 이전의 대가족”, “공중의 논의”가 “재봉건화의 희생물”이 되는 것, “사교의 토론형식”이 “공동성의 물신에 굴복”하는 것 등 부정적인 평가만 내린다(공구변 264~265; SdÖ 245~246). 그 이웃관계를 통해 여성의 자율성이 발휘되는 새로운 공론장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친밀 영역의 재편 가능성 등을 그는 주목하지 않는다.

가족의 기능 상실과 함께 이루어지는 친밀 영역의 재편과 관련된 하버마스의 부정적 진단은 문화를 소비하는 공중으로의 변화에 대한 진단에서도 반복된다. 그는 “사적 성격을 상실한 친밀 영역은 대중매체에 의해 공동화되고, 문예적 성격을 상실한 사이버 공론장이 일종의 초가족이라는 친교 지대로 압축”(공구변 270; SdÖ 250)된다고 말한다. 그에게 재편된 친밀 영역

16) 앤소니 기든스,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2003, 108~112쪽.

은 여가 행태를 함께 나누고 대중매체를 함께 향유하는 소비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런 영역은 문예적 공론장이 가졌던 비판적 기능을 갖지 못하는 공중, 즉 정치적 공론장으로 매개될 수 없는 소비 공중에 머무는 것으로 묘사된다. 1990년에 신관 서문을 쓰면서 하버마스는 “정치적으로 적극적 공중에서 개인주의적 공중으로, ‘문화비평적 공중에서 문화소비적 공중으로의’ 직선적 발전이라는 나의 진단은 단견이었다”(공구변 34; SdÖ 30)는 자기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그러한 단견을 극복하기 위해 그가 제시하는 방향은 대중매체에 대한 의사소통 사회학적 연구이지 친밀 영역에 대한 연구가 아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한국의 몇몇 도시공동체에서 초가족적 친밀 영역이 단순한 여가와 소비뿐 아니라 문예 비판의 장으로 열리는 사례, 자신들의 필요로부터 출발해 더 넓게 열려서 정치적 논의의 장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여성들과 비혼 인격들의 자율성이 발휘되는 공론장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웃관계와 소비 공중에 대한 하버마스의 진단은 아렌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사적 영역에 대한 일종의 비판주의라고 본다. 물론 하버마스는 아렌트와 달리 근대의 친밀 영역이 공론장 형성의 매개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인정은 낭만적 사랑의 핵가족 시대에 국한된다.

3. 문예적 공론장의 기능적 등가물에 대한 관심의 부재와 생활세계에 대한 합리주의적 이해의 한계

『공론장의 구조변동』 이후 공론장과 관련된 하버마스의 연구는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기 위한 상호작용의 저수지인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치적 공론장에서 활동하는 자발적 결사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친밀 영역과 문예적 공론장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친밀 영역을 그 형성 동력으로 삼았던 사적 자율성은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헌법적 기본권에 의해 주관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로만 다루어진다.¹⁷⁾ 그리고 문예적 공론장에 대해서는 그

것이 정치적 공론장으로 얽혀 들어간다는 것을 언급할 뿐,¹⁸⁾ 오늘날 그것의 기능적 등가물에 대한 관심은 합리화된 생활세계의 수많은 상호작용 연결망과 그로부터 생겨난 결사체들인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대체된다. 친밀 영역으로부터 공공 영역으로의 수로 혹은 사적 생활의 영역과 연결된 공론장의 의사소통 채널과 관련해 하버마스는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친지 등을 열거할 뿐 이런 관계들이 핵가족의 기능 상실 이후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따져보지 않는다.

루만, 기든스 등이 각자 자신들의 사회이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친밀 관계의 변화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한 데 반해, 그들과 자주 비교되곤 하는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 이론 및 체계/생활세계의 이단계 사회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이 주제를 생활세계 이론으로 대체한다. 그런데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이해는 합리주의로 경도되어 있다. 그는 근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생활세계의 합리화”, 즉 주술적 권위나 신성한 위계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상호이해지향적 행위가 가능해지는 변화에 주목한다. 그의 이단계 사회이론에서 생활세계는 체계의 조절매체에 의해 관철되는 도구적 합리성에 맞설 수 있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발현될 수 있는 단계이다.

그런데 “의사소통적 행위의 지평과 배경”¹⁹⁾으로서의 생활세계는 참여자들의 논의(Diskurs)가 이루어지는 합리적 면모만 갖는 것은 아니다. 하버마스 자신도 생활세계가 이상적 논의 상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가 상호이해 과정의 비축지식 혹은 배후확신으로 간주하는 ‘배경’은 좋은 근거를 제시하는 논의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루만에 따르면 생활세계는 ‘친숙한/낯선’의 구별법에 따라 성립한다.²⁰⁾ 따라서 생활세계에서는 친숙한 것을 재확인하는 중복의 커뮤니케이션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생활세계에서 합리적 논의가 쉽게 배제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친밀 영역이다. 사랑과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상

17) J.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1992, 151 ~ 153쪽.

18) 같은 책, 442쪽.

19)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제2권, 197쪽.

20) N. Luhmann, “Die Lebenswelt-nach Rücksprache mit Phänomenologien”, *Archiv fü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1986, 182쪽.

적 논의 절차가 쉽게 무시되곤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합리화된 생활세계 이론에서 하버마스는 이 비합리적 영역에 대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²¹⁾ 더구나 그 영역은 초기에 하버마스 자신이 부르주아 공론장을 가능하게 한 주체성 혹은 사적 자율성의 발현 장소인데도 말이다.

또한 문예적 공론장의 매개 역할에 대한 관심은 정치적 공론장에서 활동하는 연결망 및 결사체들인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대체된다. 이 대체 역시 생활세계에 대한 합리주의적 이해 혹은 공론장에 대한 과도한 정치 편향적 이해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초기 하버마스의 말대로 18세기에 문예적 공론장은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고 정치적 공론장의 탄생으로 이어지긴 했다. 하지만 열린 논의의 자리가 처음부터 정치를 주제로 삼는가 아닌가의 여부는 그 열림의 폭과 방향을 다르게 만든다. 문예를 비롯해 비교적 갈등의 부담이 적은 주제들로 시작하는 모임이나 오늘날 한국의 도시공동체들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육아, 교육, 소비 등 참여자들의 절실한 필요에 따른 주제들로 시작하는 모임에는 정치적 공론장보다 더 넓은 범위의 참여자들이 모일 수 있다. 또한 정치적 공론장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기 쉬운 여성, 청소년 등의 주도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친밀 영역과 정치적 공론장을 매개하는 초보적 공론장‘들’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계층 사회에서 하위 대항공중들(subaltern counterpublics)이 갖는 기능을 강조한다.²²⁾ 그리고 남성 유산계급의 대화 스타일로 이루어진 부르주아 공론장과 달리 포스트부르주아 공론장은 하나의 공론장이 아닌 다수의 공론장들이며, 이 공론장들은 합리주의적 부르주아가 사적인

21) 생활세계에 대한 합리주의적 이해는 근대화를 계몽 중심으로 파악하는 하버마스의 이해방식 때문이다. 그런데 근대화는 계몽의 슬로건 아래 진행된 정치, 경제, 법, 학문 등 사회의 주요 기능체계들에서의 합리화 메커니즘의 정착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 대항 계몽 혹은 계몽의 계몽으로서 등장한 낭만주의에 의한 사랑의 독립분화와 예술의 자율성 획득 또한 근대화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관해서는 사회와 개인의 관계 및 합리성 개념에 대한 루만의 관점을 재해석한 논문이며 근대화를 계몽과 낭만의 두 축으로 파악하는 논문인 정성훈, 「사회의 분화된 합리성과 개인의 유일무이한 비합리성」, 『사회와 철학』 제25집, 2013, 135~168쪽 참조.

22) N. 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Craig Calhoun(편),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1992, 123~124쪽.

것으로 간주해왔던 관심들과 이슈들을 포괄한다고 말한다.²³⁾ 비주류적 언어 스타일을 가진 다수의 공론장들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친밀 영역으로부터 떠오르는 여러 초보적 공론장들의 기능에 주목하는 필자의 견해와 상통한다.

그런데 하버마스가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정치적 공론장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초보적 공론장들이 아니라 시민사회이다. 그는 공론장에서 대중매체, 거대 에이전시, 정당 등의 지배력에 맞설 수 있는 일반적 공중의 기층조직을 시민사회(Zivilgesellschaft)라고 부른다. 그는 시민사회의 제도적 핵심이 “자유외지에 기초하는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연결망과 자발적 결사체들”이며,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출현한 단체, 조직, 운동들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사회적 문제상황이 사적 생활사에 불러일으킨 반향을 받아들여 응집시키고 증폭시켜 정치적 공론장으로 확대한다”고 말한다.²⁴⁾ 공론장에서 정치와 경제라는 두 가지 체계의 지배력에 맞서 생활세계 혹은 사생활로부터의 요구를 모아내는 것이 시민사회의 결사체들이었다.

물론 이러한 시민사회적 연결망과 결사체들에는 필자가 초보적 공론장들이라고 부른 것, 즉 친밀 영역으로부터 직접 떠오르는 열린 논의의 장이 포함될 수 있다. 도시공동체 역시 시민사회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하버마스에게 시민사회는 “이미 합리화된 생활세계 속에서만 펼쳐질 수 있는 것”²⁵⁾이며,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전환되는 정치적 영향력을 지향한다. 그래서 그의 시민사회 개념에서는 친밀 영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극히 사적이고 비정치적인 모임, 더 넓은 공적 논의의 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다소 폐쇄적인 모임은 진지하게 고려될 수 없다.

23) 같은 책, 136~137쪽.

24) J.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1992, 443쪽.

25) 같은 책, 449쪽.

III. 친밀성과 공공성의 관계

1. 친밀 영역과 사적 자율성의 관계

앞서 보았듯이 하버마스는 초기 근대의 친밀 영역에서 충만하고 자유로운 내면성이 생겨났다는 것, 그리고 소유자의 역할과 가장 혹은 인간 자체의 역할이 통일됨으로써 사적 자율성이 성립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런데 친밀 영역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가? 그것은 꼭 핵가족에 의해서만 가능한가? 이 물음에 대한 만족할만한 답변을 하버마스로부터 끌어내기는 어려우므로 필자는 친밀 관계에 관한 루만의 연구를 참조하여 답해보겠다.

루만은 “기능적 분화와 함께 개별 인격은 사회의 어느 한 하위체계에만 정착할 수 없게 되며, 그의 고유한 사회적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게 되기”때문에 인격과 사회적 체계를 사이에 체계/환경 차이가 뚜렷해진다고 말한다.²⁶⁾ 출신 가족을 통해서도 기능적 역할들을 통해서도 자기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는 개별 인격은 “가까운 세계와 먼 세계의 차이, 즉 ‘개인적으로만 유효한 경험, 평가, 반응 방식’과 ‘익명적으로 구성되고 모두에게 유효한 세계’의 차이”²⁷⁾를 사용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세계 중 가까운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하버마스가 말한 “충만하고 자유로운 내면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세계의 차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확인시켜주는 관계, 그래서 한 사람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개체화시키는 기폭제가 바로 친밀 관계이다.

루만에 따르면, 친밀 관계는 한 개인을 특정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특정한 조직의 구성원이나 기능적 역할로서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세계를 가진 하나의 인격으로 입증해주는 관계이다. 친밀 관계는 “타인의 자아중심적 세계 설계를 확증”해주는 파트너와의 관계이며, “삶의 모든 상황에서 파트너를 계속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준거의 보편성”을 갖는 관계이다.²⁸⁾

26)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2009, 31쪽.

27) 같은 책, 33쪽.

1800년을 전후해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이 생겨나기 이전까지 이런 친밀 관계는 결혼과 무관한 것이었다. 루만의 연구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는 과도함, 짧은 지속시간, 둘만의 관계 등을 특징으로 갖는 열정적 사랑과 그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덜 뚜렷한 경계를 갖는 관계인 우정이 친밀성의 코드화를 향한 경주를 벌였다. 섹슈얼리티라는 공생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었고 결혼 및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통해 지속성을 갖게 된 새로운 사랑의 의미론인 낭만적 사랑이 등장함으로써 이 경주에서 사랑이 앞서 나가게 된다. 따라서 하버마스가 친밀 영역과 동일시하는 핵가족은 친밀 관계가 안정화 된 하나의 역사적 형식일 뿐이다. 그리고 가족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친밀 영역을 통한 내면성의 성숙과 사적 자율성의 획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친밀 관계를 통한 고유한 내면세계의 발전이 먼 세계와의 차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핵가족의 시대에 익명적 대중사회에서의 생활, 즉 직장생활이나 정치적 공론장에서 활동하는 남성 가장은 가까운 세계와 먼 세계의 차이를 뚜렷이 할 수 있고 더구나 먼 세계에서 사적 자율성을 가진 자로 법적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문예적 공론장에 대공중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차이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이런 성적 불평등이 낭만적 사랑의 시대에 친밀 영역으로부터 자라난 사적 자율성의 한계였다.

2. 문예적 공론장의 기능적 등가물의 하나인 도시공동체

하버마스가 진단하고 있듯이, 20세기에 들어와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핵가족의 기능은 위축되었다. 그리고 낭만적 사랑의 성적 불평등이 폭로되었으며 아예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곧 내면성을 강화하고 사적 자율성을 육성하는 친밀 관계 자체의 위축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우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가까운 세계와 먼 세계의 차이를 사용할

28) 같은 책, 39쪽.

수 있는 직업생활을 하면서 친밀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여남이 모두 헌법적 기본권을 통해 사적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오늘날의 문제는 낭만적 사랑 이후 친밀 관계의 모델이 없다는 것, 그리고 친밀 관계들로부터 대공중의 영역으로 이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로가 없다는 것이다. 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든스, 숄트 등이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이루어진 바 있다.²⁹⁾ 그런데 이 글의 관심은 후자의 문제 해결에서 도시공동체가 유력한 해결책 중 하나라는 것, 즉 18세기 문예적 공론장에 대한 기능적 등가물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오늘날 친밀 영역으로부터 육성된 사적 자율성은 기능적 조직들에 의해 매개되지 않으면 공적 영역의 논의로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 공론장의 참여자는 대학 교수, 전문직 종사자, 직업단체 대표 등의 역할을 매개로 한다. 그중 비중 높은 역할은 중년 남성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대공중의 영역도 아니고 정치적 공론장과 연결되기도 쉽지 않지만 생활세계의 사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으며 소수의 친밀 관계보다는 조금 넓고 열린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시공동체이다. 이성애적 가족을 출발점으로 한 도시공동체들 말고도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 더 있겠지만 이 글은 그 목적에 따라 도시공동체로 논의를 좁히겠다.

필자는 선행 연구를 통해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발전한 여러 도시 마을의 관계망을 개념화하고자 했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마을을 모델로 한 연구에서 필자는 사랑을 중심으로 한 루만의 친밀 관계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둘만의 관계로 제한된 친밀 관계들을 둘러싼 사랑과 우정의 네트워크를 ‘친밀공동체(intimate community)’로 규정했다. 그 연구에서 친밀공동체는 “기본적인 친밀 관계들을 보완하면서 다수의 친밀 관계들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형성되고 약화되고 강화되기를 반복하게 하는 관계망”³⁰⁾으로 정식화되었다. 필자는 친밀 관계들이 여러 협동조합들을 비롯한 사업체, 단체 등을 구성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29) 정성훈,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 제41호, 2011, 365~366쪽.

30) 같은 글, 364쪽.

이름을 ‘친밀공동체’라고 붙였다. 그런데 여기서 친밀성이란 도시공동체의 한 속성 혹은 하나의 지향가치를 표현하는 수식어이다. 즉, 개인의 유일무이한 내면세계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고 역할로 한정되지 않는 전인격적 상호관계가 맺어지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네트워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친밀한(intimate)’이다.

이러한 개념화 작업에 대해 이 논문에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친밀 관계들에 기초한 도시공동체가 초보적 공론장들을 형성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도시공동체의 친밀 관계들로부터 육성된 사적 자율성은 도시공동체 내부에 형성된 열린 논의의 장, 공동의 공간으로 이어진다. 구성원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없는 협동조합의 회의, 숙련도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자발적 참여자들의 마을 잔치, 문예와 취미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소모임, 그리고 이런 회의, 행사, 모임 등을 계기로 간혹 발전하기도 하는 정치적 여론 형성과 정치적 참여 등이 도시공동체의 초보적 공론장들에서 이루어진다.³¹⁾ 이런 공론장들에서는 익명적 대공중의 장에서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지 못하는 주부, 노인, 청소년 등이 자신의 사적 자율성을 더 넓은 장에서 활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3. 도시공동체에서 친밀성과 공공성의 관계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마을, 강북구 삼각산 재미난마을 등 최근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도시공동체들은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모태로 하여 핵가족을 보완하는 우정의 공동체를 형성해왔다. 이 공동체들은 각 가족의 필요로부터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태동했고 그 안에서 형성된 우정이 활성화의 동력이었다. 현대 도시에는 이러한 친밀성을 기초로 한 다양한 이웃관계와 친목 모임들이 있다. 특히 한국의 대도시에는 이들과 비슷하게 육아나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여러 집단들이 있다. 그럼에도 성미산마을, 재미난마을 등이 주목받는 것은 이주율이 높은 서울에서 십여 년에 걸쳐 수

31) 성미산지킴이 운동을 통해 형성된 정치적 공론장은 2006년과 2010년 지방자치단체선거 구의원 선거에서 비록 낙선했지만 마을후보를 내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많은 협동조합들과 단체들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큰 도시공동체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모델로 자주 소개되고 있는 이 두 마을의 성장 요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두 가지 요인이 상호 상승 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요인은 한국의 대도시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가족의 변화에 따라 쉽게 끊어지기 쉬운 친밀 관계들이 새로운 협동조합 결성과 새로운 사업들을 매개로 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마을에서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이후에 초등 방과후 협동조합, 대안학교 등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필요가 제기된 새로운 교육 관련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또한 생활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을식당, 공동주택 등 소비, 주거 등 가족이 한 지역에서 꾸준히 살아가기 위한 필요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나 사업이 계속 만들어졌다.

두 번째 요인은 친밀 관계들에 기초해 더 넓게 열리고자 하는 지향을 갖게 된 것, 그리고 그 지향을 통해 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성미산마을의 사례를 보자면, 성미산 기슭에 자리잡은 육아교육공동체는 2000년대 초반 성미산지킴이 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더 넓게 열리고자 하는 지향, 즉 공공적 지향을 갖게 되었다. 지역공동체라디오인 ‘마포FM’이 생겼고, 이 방송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 여러 소수자들이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지역내 저소득층 노인과 아동을 돌보기 위한 노력은 ‘마포희망나눔’이라는 단체로 발전했다. 그리고 마을의 여러 가지 공익 사업을 총괄하고 마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사)사람과마을’이 여성가족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특히 이 사단법인을 통해 서울시를 비롯한 관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공공성 지향은 더 커졌다.³²⁾ 삼각산 재미난마을에서도 2011년 ‘(사)삼각산재미난마을’의 설립 이후 여러 가지 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강북장터’를 비롯해 공익사업이라 불릴 수 있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³³⁾

32) 유창복, 『우린 마을에서 논다』, 2010; (사)사람과마을, 「2012년 성미산마을 조사연구 보고서」, 2012.

친밀 관계들로부터 형성된 도시공동체가 자연스럽게 공공성을 지향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지향을 갖게 된 도시공동체들이 예외적일지도 모른다. 사실 많은 도시공동체들은 자신들만의 폐쇄된 친밀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느슨한 친밀 관계들의 연결망로부터 시작된 도시공동체는 정치적 목적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출발한 시민사회의 결사체들과 달리 사회의 기능 영역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사인(私人)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초보적인 공적 논의에 다가서게 된다. 협동조합들을 비롯한 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경우라 아니라면 대체로 자신들이 마을 바깥에서 하는 일을 내부로 연결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먼 세계에서의 일과 무관한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곤 한다. 그리고 먼 세계의 기능적 역할에서 주변화되기 쉬운 여성, 청소년,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자율성을 발휘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친밀성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지향하는 도시공동체는 폐쇄적 생활 혹은 친밀 관계와 관료적 관공 영역의 양극화로 인해 자리잡기 힘든 초보적 공론장들이 형성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하버마스의 이론 구도 속에서 보자면, 도시공동체는 친밀 영역과 시민사회의 결사체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수로를 여는 기능을 할 수 있다.

IV. 친밀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도시공동체 지원 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제안

도시공동체의 형성 동력이 친밀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들의 경우에도 그 설립 동기 중 하나는 ‘보육공공성’의 실현이었다.³⁴⁾

33) 삼각산 재미난마을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문헌 자료는 아직 없다. 여러 가지 인터넷 뉴스 기사와 재미난마을 네이버 카페, 그리고 마을 주민인 배우 권해효씨가 소개한 KBS 1TV “다큐 수요기획 - 재미난 마을에는 재미난 사람들이 산다” 등이 주요 자료이다. <http://bit.ly/Ugfk5K>; <http://cafe.naver.com/maeulro53>; http://videos.seoul.go.kr/player_seoul.jsp?ocode=3922

34) 1990년대 초중반 국공립어린이집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공동육아협동조합들은 맞벌

그래서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해 친밀성을 우선시하고 공공성을 사후적 과제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시민단체를 기반으로 친밀공동체가 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성만 강조할 경우 도시공동체의 활성화 동력 중 하나를 간과하기 쉬울 뿐 아니라 거대 공론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사적 자율성을 육성하여 공적 논의로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기 쉽다.

그리고 어떤 도시공동체가 더 넓게 열리고자 하는 지향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잠재적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지속성 있는 친밀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내적으로 이미 아주 작은 초보적 공론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 중 일부가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정도의 개방성만 있다면 다른 공동체들과 접촉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물론 관의 지원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더 넓게 열리고자 하는 지향을 드러낼 때 그 공동체의 공공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지만 말이다.

친밀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했을 때, 현재 한국의 정부와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도시공동체들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정책 혹은 지원 사업의 몇 가지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필자가 그런 정책들과 사업들 모두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 글이 그것들 모두에 대한 개입을 시도하고자 하는 정책보고서는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하나의 법과 하나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만 사례로 삼아 다루고자 한다.

먼저 도시공동체를 이루는 주요 조직인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겠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을 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 구별하고 있다(제4조).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 전자는 해산과 청산을 상법을 준용하여 하며(제60조), 배당을 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을 위한 비영리보육시설 확충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설립되었다. 그래서 공동육아협동조합들의 연합체이자 지원기구인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비영리보육법인 모형 개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추진 등 보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립에 참여해왔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보육법인’ 모형 개발 연구」, 여성부, 2003;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서울시 공동육아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서울연구원, 2013 등 참조.

후자는 민법을 준용하여 한다(제105조). 그리고 후자는 더 철저한 운영 공개 의무를 지는 대신(제96조)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을 할 수 있고(제94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 기본법에 담겨있다. 조합원들 자신의 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소외계층을 위한 고용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더 공공적이며 관이 이들을 더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현행 기본법에서는 조합의 설립 신고 단계부터 (일반)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를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점,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려면 해산하고 다시 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일반)협동조합들은 자기들끼리만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들 역시 자기들끼지만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하나의 작은 모임이 협동조합을 결성하려 할 때 애초부터 자신들의 공공성 지향을 선택해야 한다. 작은 친밀 관계들이 성장 과정에서 더 넓게 열리고자 하는 지향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공익 지향성 수준이 다른 여러 협동조합들이 함께 연합회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더 큰 공공 영역을 형성해나갈 가능성을 차단한다. 필자는 설립 신고 단계에서 두 유형 중 하나를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규정하는 기본 유형은 협동조합으로 하고, 협동조합들 중에서 해당 금지를 준수하고 공공적 활동 성과를 보이는 조합들에 대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 도시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본다.

다음으로 검토할 것은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 사업, 부모커뮤니티 지원 사업, 그리고 몇몇 수도권 지자체들에서 시행중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모 사업 방식이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런 공모 사업들은 계획서에 입각해 선정단체를 가려낸다. 이 방식은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지키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 그 모임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들을 이루고 있는지, 관의 재정 지원 없이도 과연 지속될 수 있는 관계들 인지를 가려낼 수 없다. 계획서만 그럴 듯하게 잘 써낸 곳이 재정 지원을 받아 요식적인 사업을 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더구나 작은 규모의 공동체

들은 이런 계획서를 그럴 듯하게 써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공모 방식을 통하지 않는 더 나은 지원 방식을 쉽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공동체들의 친밀성, 지속성, 공공성 지향 등을 관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가려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공모 사업을 통해 도시공동체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보다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돈을 관계 형성 동력으로 만드는 것은 그 관계의 친밀성을 파괴하거나 왜곡하기 쉽기 때문이다. 성미산마을이나 재미난마을은 초기 10여 년 간 거의 아무런 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때로는 관과 충돌하기도 했지만, 친밀 관계들을 동력으로 더 넓은 도시공동체들을 만들어왔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역사업을 위한 재정보다는 그런 사업을 모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다. 공무원들의 퇴근시간 이후와 주말에는 문을 닫아버리는 관공서 회의실, 도서관 등을 열어놓는다면 마을사업을 모의하기 쉬워질 것이다. 이런 공간을 주민자치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나 마을 카페 운영 공간의 임대 비용을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장기 지속에 도움을 줄 것이다.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야간과 주말에 이용 가능한 공간 등을 저리임대해 준다든지, 관의 연대보증으로 은행 대출 금리를 낮추는 걸 도와준다든지 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다.

박주형은 푸코(Michel Foucault)의 ‘통치성’ 개념과 로즈(Nikolas Rose)의 ‘공동체를 통한 통치’ 개념을 활용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과 마찬가지로 “계산가능하고(calculable) 통치가능한(governable) ‘마을’ 만들기”³⁵⁾라고 규정한 바 있다. 관이 요구하는 공공성의 기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비판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쇠퇴하느냐는 전적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³⁶⁾이라는 지적도 타당하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모델인 성

35) 박주형,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사회』 제23권 1호, 2013, 18쪽.

36) 같은 글, 36쪽.

미산마을이야말로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발적 노력과 능력이 법적·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히는 지점, 도시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점 등에 대해서는 관의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했는데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은행 거래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만약 공동육아를 시작하려는 직장인들이 야간에 아이들과 함께 준비모임을 가질 공간을 빌리기가 어렵다면, 그런 어려움을 관이 앞장서 해결해주는 것이 공동체의 도구는 아닐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도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이고 간접적인 관의 지원을 하나 더 제안하자면, 세입자들의 잦은 이주가 필요 없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친밀한 도시공동체 형성에 가장 큰 장애는 한 지역에서의 짧은 거주기간이다. 이직 등의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2년마다 어디로 옮겨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는 주택임대제도는 육성되어 가던 친밀공동체를 허무하게 위축시키곤 한다. 그래서 박주형이 지적하듯이 서울시가 한편으로는 너무 관의 프레임에 맞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진행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노후주택개량 사업과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발적 도시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면에서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동체는 그 자체로 공공적이지는 않지만, 친밀 영역과 관공 영역을 매개하는 초보적 공론장들을 활성화시키는 유력한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성이라는 지향만이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시키지는 않는다. 도시공동체의 공공성에 주목하는 정책과 사업의 방향은 친밀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 그 긴장관계를 충분히 주목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V. 결론

“마을이 세상을 바꾼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등의 말이 유행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한국에서는 이웃관계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 이웃, 공동체 등에 대한 강조가 유교 전통사회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을 더디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필자도 역시 개인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공동체의 테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개념이 친밀성과 공공성이다. 친밀성은 전통적인 가족주의, 연고주의 등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근대적 개념이다. 그것은 개인을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 서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내면세계를 가진 자로서 확증하고 존중하는 관계에 대해 부여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친밀성의 코드화는 전통적 가족과 공동체에서는 불가능했던 권리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전통사회에서는 매우 비개연적인 말이었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더 이상 사귀지 않겠다’,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등을 말할 자유를 통해서만 친밀성은 ‘친밀한/친밀하지 않은’이라는 구별을 사용하는 코드로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친밀성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현실적(actual)·자발적(voluntary) 공동체³⁷⁾는 끊임없는 구성원 교체를 감수해야 하는 불안정한 것이며,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친밀 관계들이 생성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끊임없는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가치가 바로 공공성이다. 기존 구성원들의 폐쇄적 친밀성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열림’의 지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친밀성은 그 자체로는 비합리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이 원리만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는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 친구에 대한 과도한 존중은 때때로 다른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동적인’ 방향은 무엇인가에 관한 토론과 그것의 절차화는 친밀공동체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가끔씩 공동체 외부의 관점에서 해당 공동체가 전체사회적 공공성

37) 이 개념화에 관해서는 정성훈,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 제41호, 2011, 357~359쪽.

을 위배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질 필요도 있다. 친밀성이 갖는 자기파괴적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보완 기능을 하는 것이 공공성이라는 가치이다.

하지만 역으로 절차화된 토론 절차가 개인들의 부담 없는 사교를 압도할 만큼 과도해진다면, 공동체 외부의 비판적 관점이 내부의 자기공정을 압도해버린다면, 이 공동체는 다른 형식적 조직들과의 차별성을 상실한다. 그리고 사적 자율성을 육성하는 초보적 공론장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한다. 그래서 도시공동체는 친밀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 지향가치의 긴장관계 속에 있을 때 재생산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다른 집단들이 쉽게 갖기 어려운 기능을 가질 수 있다.

투 고 일: 2013. 06. 27.
심사완료일: 2013. 07. 16.
게재확정일: 2013. 07. 17.

정성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참고문헌

- 니클라스 루만(정성훈 외 2인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 새물결, 2009.
- 박주형,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사회』 제23권 1호, 2013.
- (사)사람과마을, 「2012년 성미산마을 조사연구 보고서」, 2012.
- 앤소니 기든스(황정미·배은경 옮김),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2003.
- 위르겐 하버마스(장춘익 옮김), 『의사소통행위이론』 제2권, 나남출판, 2006.
- 유창복, 『우린 마을에서 논다』, 또하나의문화, 2010.
- 정성훈,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 제41호, 2011.
- 정성훈, 「사회적 분화된 합리성과 개인의 유일무이한 비합리성」, 『사회와 철학』 제25집, 2013.
- 협동조합 기본법[시행 2012.12.1] [법률 제11211호, 2012.1.26, 제정]
- Arendt, Hannah, *Men in Dark Times*, A Harvest Book, 1970.
-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 Habermas, Jürgen,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Suhrkamp, 1990;
- 위르겐 하버마스(한승완 옮김),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출판, 2001.
- Habermas, Jürgen, *Faktizität und Geltung*, Suhrkamp, 1992.
- Fraser, Nancy,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Craig Calhoun(편),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The MIT Press, 1992.
- Luhmann, Niklas, “Die Lebenswelt-nach Rücksprache mit Phänomenologien”. *Archiv fü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1986.

ABSTRACT

Intimacy and Publicness in Urban Communities

Jung, Sung-Hoon

A recent trend of urban policies in Korea is the promotion of small urban communities. By exampl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unched its “Community-Building Program” in March, 2012 while introducing its “Basic Law of Cooperatives” in December, 2012. This trend could be regarded as recognizing the publicness of urban communities. It results from the conceptual change of the public (公共), which does not equate with the official (官公). The philosophical theory of the public would be a factor of bringing about this change. In regard to the concept of the public, Hannah Arendt and Jürgen Habermas are two of the most influential theorists in Korea.

In respect of understanding the publicness of ‘modern’ society, Habermas’ theory of public sphere (Öffentlichkeit) is more appropriate than Arendt’s. He shows that the modern bourgeois public sphere has risen from the intimate sphere. Nevertheless, his pessimist perspective of the post-bourgeois (since late 19th century) public sphere in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and his rationalistic conception of life-world (Lebenswelt) in <Theorie des kommunikative Handelns> have two weak points.

In his theory,

(a) the functional equivalent of the literal public sphere in post-bourgeois epoch is absent.

In the 18th century, the literal public sphere was the bridge between the intimate sphere and the political public sphere. The functional equivalent suggested by Habermas in 1990s is civil society, but it is far from intimate relations.

(b) The alternative vision of the intimate sphere after romantic love is absent.

Habermas identifies the intimate sphere with families, and devaluates the meaning of neighborhood relations. Therefore, he cannot see the possibility of the alternative intimate communities.

I see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intimate spheres in new Korean urban communities, by example, “Sungmisan community” (Mapo-Gu, Seoul), “Jaeminan community”(Gangbuk-Gu, Seoul). The seeds of these communities are “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s”(共同育兒 協同組合) established in the mid-1990s. The need for childcare united the members of these cooperatives, and the growth of the intimacy within the members evolved into additional cooperatives. The expanded communities gradually have participated in public affairs, and in this participation women have become more autonomous.

Urban communities based on intimate relations are some of the functional equivalents of the literal public sphere in the 18th century. The majority of urban communities can not start with public concerns. Closed intimate communities gradually would be open and seek public value. Therefore, urban policies have to consider two values of urban communities simultaneously. One is intimacy, and another is publicness. One-sided emphasis on publicness might destroy the potential of intimate communities.

A recent trend of urban policies in Korea risks weakening intimacy. One example is social cooperatives. According to basic law, social cooperatives are distinguished from (general) cooperatives. Another

example is direct-funding for urban communities. The dependence on funding by government might have destructive effects on intimate relations.

Keywords: Urban Community, Intimacy, Publicness, Cooperative, Jürgen Habermas, Niklas Luhmann